

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

제정 2022. 8. 4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 452호

개정 2023. 9. 26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 563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·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화재안전 관리계획서”이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.
2. “적층식 랙”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(KS)의 랙 용어(KS T 2023)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,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.
3. “방문자”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,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.
4. “발화원”이란 불꽃, 불씨, 고온, 가연성 물질, 전기·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, 보관하여야 하며,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

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,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(단, 별표1의 가목 3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)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.

제4조(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)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.

제5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(제4조 관련)

1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.

가. 화재예방 부분

- 1)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(發火源)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실시 하고, 발화원(發火源)과 가연물(可燃物)은 서로 간의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 막 설치 등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(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위험물은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)
- 2)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보관 금지 등 보관물품 관리 조치
- 3) 가연물 폐기물 등이 쌓이지 않고 적절히 보관되다가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연성 폐기물 관리 조치
- 4) 누전·합선·용량초과·과열·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에 관한 수시점검 조치
- 5) 지게차 등 보관물품의 이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행 및 이송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설비·송전선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
- 6) 화기취급 작업자는 화기를 취급하기 전에 작업 시간, 장소, 작업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조치
- 7) 냉장·냉동 창고의 경우 냉장·냉동 시스템의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 하고 시스템의 운전·점검 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
- 8) 물품 보관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(메자닌)에서 용접·용단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,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나. 화재대응 부분

- 1) 물류창고 내 경보설비의 화재발생 알림, 근무자의 화재목격 통지 등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통보계획 및 조치
- 2) 소방시설인 소화기, 발신기, 유도등 등의 위치가 랙(받침대)·선반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물류창고 내 임의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위치 표시 조치

- 3)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이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
- 4)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셔터와 방화스크린셔터가 폐쇄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
- 5) 피난용 출입문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하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는 물건 적치(쌓아 둠) 방지 조치

다. 화재대비 부분

- 1) 근무자에 대한 연1회 이상 피난계단·피난통로·비상구 등의 위치, 각 구역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,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피난 안내교육 실시(단기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피난 안내 실시)
- 2) 근무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교육 조치
- 3) 방문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시 조치계획 작성 및 안내교육 실시
- 4) 화재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의 기록 조치

라. 기반자료 부분

- 1)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 및 평면도·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, 방재실(다른 부분과 방화구획) 등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춰 놓거나 전산으로 관리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 등 재난대응 기관에 제공하는 조치
- 2) 물품 보관의 적재(쌓아 둠) 형태에 대한 정보를 작성·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
- 3) 랙, 선반 등 보관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·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
 - ① 랙 및 선반의 단수(세로 칸의 수)와 열수(가로 칸의 수)
 - ② 랙 및 선반의 높이, 폭, 종방향(깊이방향) 길이
 - ③ 랙 및 선반 통로의 폭 (각 랙·선반 사이의 간격)
 - ④ 랙·선반의 최상부와 천장간의 거리
- 4) 적층식 랙(메자닌) 설치 여부, 사용 용도 및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·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
- 5)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팔릿(pallet), 보관박스 등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 등의 재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·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
- 6) 지하층의 면적 및 지하층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정보를 작성·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

[별표 2]

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(제4조 관련)

1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면서 물류창고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이행한다.

가. 화재예방 부분

- 1) 화재예방 및 화재 원인 조사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내·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

나. 화재대응 부분

- 1) 공간이 넓은 물류창고의 특성과 랙·선반 등의 대형 구조물로 인해 피난동선의 신속한 파악이 곤란한 경우 물류창고 내부의 작업장과 물품적치 공간 등에 피난동선이 표시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 등의 적절한 설치 조치
- 2) 소화기,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가 표시된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등의 적절한 설치 조치

다. 화재대비 부분

- 1) 근무자의 출·퇴근 관리 시스템·체계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 근무자의 출·퇴근 현황을 신속히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조치
- 2) 물류창고 건물의 관리책임이 일원화되지 않거나 임대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안전 조치에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한 화재예방·대응·대비 분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연1회 이상 합동 교육·훈련 실시